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5일 01시 30분



목차

목차	2
과태료	3
과태료제도 시행 사유	3
일반적인 부과 절차	3
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	3
행정사항	3
이륜자동차 과태료	4

자동차등록	건설기계등록	이륜차신고	과태료	취득 등록면허세
검사/의무보험	자동차등록현황	민원서식	자주하는 질문	오시는 길

- 자동차과태료
- 건설기계과태료
- 이륜자동차과태료
- 압류등록/해제

과태료제도 시행 사유

- 국민에게 경미한 사건으로 번거로운 절차 이행방지
- 전과자 양산방지
- 법원의 업무과중

일반적인 부과 절차

- 1 행정청이 부과하고
- 2 위반자가 동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종료
- 3 불복하여 이의신청시 행정청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으로 통보 (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건은 효력상실)
- 4 관할 법원은 [비송사건 절차법]에 의한 과태료 재판(법원에서 과태료 결정 부과처분)
- 5 불복시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.

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

- 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분의 예에 따라 소유재산(부동산, 차량, 채권, 급여)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강제 징수합니다.

행정사항

- 의견진술 : 과태료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의견진술은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시면 심사 후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.
- 이의신청 : 과태료부과 금액 또는 사유등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청에 신청하여 야함(기간경과시 신청불가) 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서 과태료를 결정부 과 처분하게 됩니다.

이륜자동차 과태료

구분	금액	관련법조항
사용신고필증 미휴대 운행	2만원	법제18조제1항
구조 또는 안전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상태에서 운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원동기, 연료, 차체, 소음, 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 ▪ 승차장치, 물품적재장치 ▪ 기타 구조 및 안전장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20만원 ▪ 5만원 ▪ 3만원 	법제50조제1항
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때	50만원	법제48조제1항
변경신고, 사용폐지신고를 기간내 하지 아니한 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▪ 90일 초과 180일이내 ▪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초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2만원 ▪ 6만원 ▪ 10만원 	법제48조제2항
번호판, 봉인 미부착 운행	20만원	법제49조
사용신고하는 자가 직접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	30만원	법제49조제2항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